

공 시 송 달 공 고

『자동차관리법』 제43조제1항2호(자동차정기검사) 및 같은 법 제43조의2(자동차종합검사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제4항제15의4호·제84조제4항제15의5호의 규정에 따라 차량소유자에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및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,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『행정절차법』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1. 제 목: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및 고지서 송달불능분
공시송달 공고(2026.5월 발송분)
2. 대 상 자: 이*형(울산광역시 동구 화진길)등 104명(붙임 참조)
3. 공고기간: 2026.06.01. ~ 2026.06.15.(15일간)
4. 처분내용

- 과태료 처분사전통지대상자는 위 사항에 의견이 있을 시 울산광역시 동구청 교통행정과(☎052-209-3705)로 의견제출할 수 있으며, **6월 말일까지** 의견 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규정에 따라 행정 처분(과태료부과)을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
※ 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 제2조에 따른 수급자, 『한부모가족지원법』 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·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, 『장애인복지법』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, 국가유공자(상이등급 3급 이상), 미성년자는 공고 기간 내에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 시 20% 과태료 감경해 드립니다. 또한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.

-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공고기간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없을 시는 울산광역시 동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관내 금융기관 및 농협,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가산금이 최고 75%(가산금 3%, 증가산금 매월 1.2%)까지 가산되며 『국세징수법』 제24조 제1항 및 『지방세법』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.

5. 문의처: 울산광역시 동구청 교통행정과 (052-209-3705)

2026. 6. 1.

울산광역시 동구청장